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구성·기능·운영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4조의2)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경찰서 단위까지 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확대되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사실 제공 방법 신설 (안 제6조의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보험가입사실 제공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사업장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보험가입사실 정보제공 방법을 마련함

다. 122연안순찰대 명칭 변경 (안 제8조)

긴급신고 통합에 따른 기존 ‘122연안순찰대’의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함.

라.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안 별표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의무 및 보험정보제공의무 신설에 따라 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위원의”를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중앙협의회 위원들의 해임 및 해촉)”을 “(중앙협의회 위원들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의2”를 “제3조제3항제1호”로, “해임 또는 해촉”을 “해촉”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3(중앙협의회 운영) ① 중앙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중앙협의회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 ④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을 “(광역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를 “광역 및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이하 “광역 및 지역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협의회”를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협의회”를 “광역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가. 육군 연대급 부대

나. 해군 전단급·전대급 부대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6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협의회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광역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협의회”를 “광역 및 지역협의회”로 한다.

⑥ 제3항제4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지방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광역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제4호”를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으로 본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광역 및 지역협의회 운영) ① 광역 및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 및 지역협의회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 및 지역협회의 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보험등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 2제1항에 따라 그가 가입한 보험등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

제8조의 제목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을 “(연안순찰대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2연안순찰대원”을 “연안순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100톤 미만의 함정으로 한정한다)”을 “100톤 미만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착용하여야”를 “착용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122연안순찰대”를 “연안순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위탁받”을 “위탁 받”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제3항제4호”를 “제4조제3항제4호 및 제4조제5항제4호”로, “지방협의회”를 “광역 및 지역협의회”로 한다.

별표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20만원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3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u>위원의</u>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 <u>위원은</u> <u>「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u> <u>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u>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중앙협회의회의 협의 사항을</u> <u>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u> <u>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u> <u>양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u> <u>청장이 지명한다.</u>	<u><삭 제></u>
제3조의2(<u>중앙협회의회의 위원</u> 의 해임 및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 제3항제1호, 제3호의2 또는 제4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u>해임 또는 해촉</u> (解 囑)할 수 있다.	제3조의2(<u>중앙협회의회의 위원</u> 의 해 촉) ----- <u>제3조</u> <u>제3항제1호</u> ----- ----- ----- ----- <u>해촉</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조의3(중앙협회의회의 운영) ①</u> <u>중앙협회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u> <u>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u> <u>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u>

제4조(지방연안사고예방협회의의 구성·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안사고예방협회의(이하 “지방협회의”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협회의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회의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회의의 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광역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회의의 구성·기능 등) ① --
----- 광역 및 지역연안사고
예방협회의(이하 “광역 및 지역
협회의”-----

-----.

② 광역연안사고예방협회의(이하 “광역협회의”라 한다)-----

-----.

③ 광역협회의-----

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④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방협의회는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지방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

천하는 사람

가. 육군 연대급 부대

나. 해군 전단급·전대급 부대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3항제4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광역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

1. ~ 3. (현행과 같음)

4. -----

----- 광역 및 지역협의회-----

<삭 제>

한다.

제4조의2(지방협의회 위원의 해
촉)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3
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조의2(광역 및 지역협의회 위
원의 해촉) ① ----- 제4조제
3항제2호 또는 제4호-----

-----.

② 제4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
찰서장”으로 본다.

제4조의3(광역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 및 지역협의회는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④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 및 지역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 활동)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 활동) ----- 가입해야 -----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등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등 금액) ----- 가입해야 ----- 금액-----
<신 설>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그가 가입한 보험등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
제8조(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122연안 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생략)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22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해양경찰청합정(100톤 미만의 합정으로 한정한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생략)

2. (생략)

----- 연안순찰대원-----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양경찰구조대-----

다. 100톤 미만의 해양경찰청 소속 합정에서-----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생략)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22 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3.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착용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1. (현행과 같음)

2. ----- 연안 순찰대-----

3.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1조의2제2항-----

-----.

③ -----
----- 위탁 받-----

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u>고</u> <u>시하여야</u> 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 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 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u>법 제11조제3항</u>에 따른 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생 략) 3. 법 제17조에 따른 <u>민간연안</u> <u>순찰요원</u> 위촉 등에 관한 사 무 4. 제3조제3항제4호 또는 <u>제4조</u> <u>제3항제4호</u>에 따른 중앙협의 회 또는 <u>지방협의회</u> 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사무	----- <u>고</u> <u>시해야</u>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1. <u>법 제11조의2제1항</u>----- ----- 2. (현행과 같음) 3. ----- <u>연안안전</u> <u>지킴이</u> ----- -- 4. ----- <u>제4조제</u> <u>3항제4호</u> 및 <u>제4조제5항제4호</u> ----- <u>광역 및 지역협의회</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연 락 처	(032) 835 - 2239